

2022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지방세 안내 및 상담

구 분	우편번호	주 소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번호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로 정각로 29(구월동) (http://www.incheon.go.kr)	440-2540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로 정각로 29(구월동) (http://www.incheon.go.kr)	440-2630
중 구 (세무1,2과)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 (http://www.icjg.go.kr)	760-7230(세무1과) 760-7720(세무2과)
동 구 (세 무 과)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http://www.icdonggu.go.kr)	770-6270
미추홀구 (세무1,2과)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http://www.michu.incheon.kr)	880-4175(세무1과) 880-7463(세무2과)
연수구 (세무1,2과)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http://www.yeonsu.go.kr)	749-7460(세무1과) 749-7530(세무2과)
남동구 (세무과, 세입징수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http://www.namdong.go.kr)	453-2360(세무과) 453-2350(세입징수과)
부평구 (세무1,2과)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http://www.icbp.go.kr)	509-6230(세무1과) 509-8920(세무2과)
계양구 (세무1,2과)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http://www.gyeyang.go.kr)	450-5221(세무1과) 450-5251(세무2과)
서 구 (세무1,2과)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http://www.seo.incheon.kr)	560-4190(세무1과) 560-4210(세무2과)
강화군 (재 무 과)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http://www.ganghwa.go.kr)	930-3041
옹진군 (재 무 과)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http://www.ongjin.go.kr)	899-2410

마을세무사 제도



[연수구 소속마을(동) 마을세무사 현황]

소속마을(동)	마을세무사		₽사	연락처
옥련1,2동, 청학동	김	기	영	813-6102
연수1,2,3동, 선학동	박	기	영	202-2990
연수1,2,3동	전	호	경	831-0324
동춘1,2,3동	0]	재	동	715-7654
	0]	세	웅	811-5755
소디19945도	०)	승	재	834-5714
송도1,2,3,4,5동	고	봉	성	832-1909
	최	종	국	207-1771

월별 지방세·국세 납부 안내

월별	지 방	세	<i>⊐</i>
펄벌	광역시세	군·구세	국 세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31.한) 9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1.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한)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3.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31.한)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한)
5월	• 지방소득세(소득세) 신고납부(5.31.한)		• 소득세 확정신고(5.31.한)
6월	자동차세 납기(6.30.한)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6.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30.한)
7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기(7.16.~7.31.)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남부(7.31.한) 	• 재산세[주택(1/2)·건축물분, 선박,항공기] 납기(7.16.~7.31.) ※ 주택 연세액 1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징수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한)
8월	• 주민세(개인분) 납기 (8.16.~8.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8.31한)	
9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기(9.16.~9.30.) 자동차세 연세 액 일시납부 /분할납부(9.30.한)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9.16.~9.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9.30.한)
10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한)
12월	• 자동차세 납기(12.16.~12.31.) • 자동차세 분할납부(12.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31.한) • 종합부동산세납기 (12.1.~12.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정수): 매월 10일한 • 레저세: 매월 10일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특정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담배소비세: 매월 20일한 • 자동차세(주행분):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일 한)
수시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납부 방법	주요내용	
방문납부 (금융기관군구세무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등 금융기관 방문 또는 구청 세무과.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	
전화이용 납부 (ARS)		전화한통으로 간편하게 인천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 ☎ ARS 전화 : 1599-7200, 1661-7200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등 가능 지방세 포털사이트 (신고납부 / 조회납부 / 전자고지 신청 / 자동이체 신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과오납환급 신청 등)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 (etax.incheon.go.kr)	인천시에서 고지된 지방세 인터넷 이용 납부 가능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전국 지방세를 인터넷 지로사이트 이용 납부 가능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납부)	전국 지방세를 납세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 가능	
	가상계좌 이체	개인별 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남부	
납부 매체	신용카드 납부	납부방법: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기, 구청 세무과 신용카드 단말기 *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지방세 납부 (사용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 또는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또는 신용카드)에서 출금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 적용세목: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신청방법: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각 구청 세무과 *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온라인 신청, 구청 세무과 방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월중 연세액 신고·남부시에는 자동차세 연간세액(1월분 제외)의 10%를 공제 신청방법 :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 전화·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인천 이택스) 이용	
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고지서 1장당세액 공제(정기분에 한함) 전자고지 신청 : 800원 공제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신청 : 800원 공제 전자고지 +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신청 : 1,600원 공제 신청방법 : 위택스, 이택스, 구청 세무과 방문 (*전화신청 불가)	
	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 신청하는 제도 신청방법 : 군구 세무과에서 직접신청 또는 홈페이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이용	

목 차

I. 지방세 개요	
1. 지방세란?	2
2. 지방세 용어	4
3. 지방세 일람표	··· 7
Ⅱ.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1. 취득세	· 10
2. 등록면허세	· 17
3. 레저세	· 20
4. 담배소비세	· 21
5. 지방소비세	· 22
6. 주민세	· 23
7. 지방소득세	· 24
8. 재산세	· 26
9. 자동차세	. 30
10. 지역자원시설세	· 31
11. 지방교육세	. 32
Ⅲ.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1. 납세자보호관 제도	. 34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42
IV.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	. 16
1. 시청세합에 되한 미과세 ***********************************	
4. : 1 O : 11 7 1/11 1/ H H 7 1 1/ D 1/	

3.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60	3. 지병
4.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62	4. 소싱
. 유용한 지방세 정보	V. 유용
1. 지방세 구제제도 ··································	., •
	, -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68	2. 수정
3.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71	3. 지방
4. 지방세 체납시 제재73	4. 지방
5. 납세증명서의 제출74	5. 납세

Ⅰ. 지방세 개요

1 지방세란?

1 지방세 개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 도세 또는 시·군세·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2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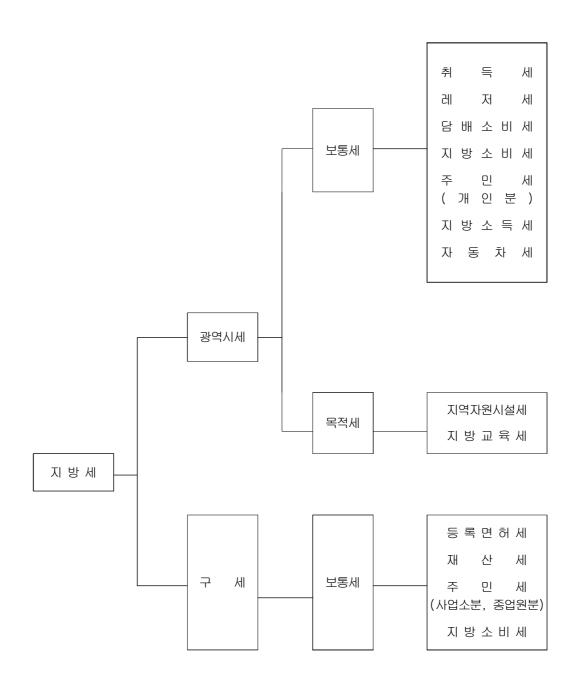
-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_1.11.11	지방세법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 - 관계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 관계법임

3 지방세의 분류



2 **지방세 용어**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함

☞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함

☞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함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함

☞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함

☞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함

☞ 세율

세(稅)를 부담하는 비율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답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 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

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음.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음

☞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함

☞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하을 말함

☞ 세무공무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함

☞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미납부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위법 또는 착오 부과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 징수하는 방식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특별징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의미.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

■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함

☞ 체납처분비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함

■ 체납자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함

☞ 체납액

체납된 지방세와 그 체납처분비를 말함

지방세 일람표

1 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 민 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개인분: 보통징수(납기 8.16~8.31) 사업소분: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8.1~8.31) 중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 동 차 세	보통징수신고납부	 정기분: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수시분: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보통징수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양도소득분 : 국세 종료 후 2개월 이내 등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수시부과, 무신고 및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결장·경정 고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보통징수	• 다음달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특정자원·특정시설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소방분: 매년 7월(16~31), 9월(16~30)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재 산 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담배소비세·주민세(사업소분)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2 지방세 세율

세 목		과 세 대 상		세	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2.3% ~ 7.0% 유상취득(주택): 1.0% 중과세율(법인, 사치성재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소유권(0.02%), 기타(건대	당 1만5천원)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등록면허세	0 4	기계장비의 등록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	허	18,000원~67,500원		
	종합소득, 퇴직소	득		1천분의 6 ~ 1천분의 4	5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1천분의 6(16) ~ 1천분의 1천분의 10 ~ 1천분의	•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특별징수			원천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인분	개인(세대주)		10,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75,000원+330㎡초과시 1㎡당 250원) 법인[(75,000~300,000원)+330㎡초과시 1㎡당 250원]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1㎡당 500원		
	종업원분	급여총액		급여총액의 0.5%		
		승용 자동차(비영업용)		년 1cc당 80~200원		
자동차세	소유분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5천원~ 11만5천원	6천6백원~ 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서	네(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 09.5.21)	
	재산세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세 주택		건축물 0.25%, 별장 4%, 선 고급선박 5%, 항공기 0.3% 토지 종합: 0.2% ~ 0.5% 분리: 0.07%~4%		
재산세				주택 0.1% ~ 0.4%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 0.05% ~ 0.35% (* 21~ * 2		
	재산세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3 0.14%		
지역자원	소방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시역사원 시설세	특정자원분	지하수		1㎡당 음용수(200원), 온천수(100원), 기타(20원)		
	특정시설분	발전소		kwh당 원자력(1원), 화력	발전(0.3원)	
지방교육세	' ' ' ' ' '			20%, 레저세액의 40%, 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서	액의 43.99%	
담배소비세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20개비(1갑)당 1,007원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		발매금 총액의 10%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3.7%		

Ⅱ.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1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 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40/1,000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취득가액의 10~30/1,000 (6억이하 10/1000, 6억초과~9억이하 10~30/1000, 9억초과 30/1000) * 조정지역 1세대2주택(80/1,000), 법인·조정지역 1세대3주택이상(120/1,000) 【기타 유형별 세부적인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참조】 ○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신.증설공장 :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취득시기	○ 부동산 매매 시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 건축물 건축·개수 시 :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 시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기권리증 등 ○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 ○ 토지·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납 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가 산 세 적 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지연(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참고 1 취득세 세율표

①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상속			농지	23/1,000(2.3%)
1	787	· 6 즉		농지 외	28/1,000(2.8%)
	사소	외 무상취득			35/1,000(3.5%)
	0 7	7 1 0 11 7	28/1,000(2.8%)		
a = 11	원시		28/1,000(2.8%)		
부동산		물의 분할 등의 취	23/1,000(2.3%)		
	합유・	총유물의 분할 취	위득 		23/1,000(2.3%)
	그 밖	의 원인으로 인현	한 취득	농지	30/1,000(3.0%)
		농지 외			40/1,000(4.0%)
	주택	유상거래 취득(일	[반)		10~30/1000(1~3%)
			상속취득		25/1,000(2.5%)
		등기·등록	상속 외 무상추]득	30/1,000(3.0%)
		대상인 선박 (소형선박제외)	원시취득		20.2/1,000(2.02%)
	선박	(소영선박세외)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1,000(2.02%)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30/1,000(3.0%)
		소형선박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20.2/1,000(2.02%)
		소영신틱	동력수상레저기구		20.2/1,000(2.02%)
		그 밖의 선박			20/1,000(2.0%)
		비영업용			70/1,000(7.0%)
부동산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1,000(4.0%)
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20/1,000(2.0%)
득세율	차량		비영업용		50/1,000(5.0%)
		그 밖의 자동차		경자동차	40/1,000(4.0%)
			영업용		40/1,000(4.0%)
		그 외의 자동차	}		20/1,000(2.0%)
		기계장비			30/1,000(3.0%)
		7 1711-8 11	등록대상이 아	닌 기계장비	20/1,000(2.0%)
			항공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1,000(2.0%)
		항공기	그 밖의 항공기		20.2/1,000(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1,000(2.01%)
	입목		20/1,000(2.0%)		
		권·어업권·양식업	 권		20/1,000(2.0%)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20/1,000(2.0%)

^{*} 세부적인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참조

② 중과세율 : 표준세율+가산세율(중과기준 세율×배율)

	구 분	세 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및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대상
과밀 억제 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대상
0 1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 법인 2. 1세대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3. 1세대3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4주택(비조정대상지역) 이상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무상취득	1. 제11조제1항제7호나목(4%)+(중과기준세율(2%)×4배} 2. 제11조제1항제7호나목(4%)+(중과기준세율(2%)×2배} 3. 제11조제1항제7호나목(4%)+(중과기준세율(2%)×4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4%)+(중과기준세율(2%)×4배
	③ ① 또는 ② + 사치성 재산	(① 또는 ②)+{중과기준세율(2%)×4배}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참조

③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의 매매, 상속(1가구 1주택), 법인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과세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세 등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과세

참고 2 취득세 과세대상

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4호).

②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원동기의 동력원이 휘발유인지경유인지 또는 전기인지 등은 묻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차량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등록된자동차에 한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와 다른 점임.

③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8호).

④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 세법 제6조 제9호).

⑤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0호).

⑥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⑦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⑧ 어업권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3호).

⑨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3의2호)

① 골프회워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①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②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홍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③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14)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참고 3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구 분	취득의 시기	비고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② 공정증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른 계약해제신 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② 공정증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른 계약해제신 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④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 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 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 증 교부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 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 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 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 용일 중 빠른 날	

구 분	취득의 시기	비고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 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 를 취득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토지를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 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소 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 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 코브zi 드	J m L E P	0 의노 기		
납세의무자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과세표준	○ 등록분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등록에 대	한 등록면허서] (주요 세	율)	
		소유권 보존 등	 동기		8/1,000
		, ,, ,	<u> </u>		20/1,000
				유상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	_동 기		해당주택: 해당세율×0.5
				무상	15/1,000 (*상속:8/1,000)
		지상권, 저당권	l,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2/1,000
		경매신청, 가입	라류, 가처분	, 가등기	2/1,000
	선박 등기 또는	 = 등록	소유권		0.2/1,000
	차량 등록		소유권(비	 영업용 승용)	50/1,000 (*경차:20/1,000)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10/1,000
세 율		법인설립		4/1,000 (*비영리:2/1,000)	
" =	법인 등기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참조				
	WILMEE WOMB WEST (WE) DI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군 지역
	l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	~ 종		40,500원	12,000원
	4-	종		27,000원	9,000원
	5-	종		18,000원	4,500원
	○ 등록분 :	등기 · 등록관/	 서 접수일까	가지 신고·납부	
	* 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부과대상·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납 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면허분(정기분) : 매년 1. 16 ~ 1. 31 면허분(수시분) : 면허 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				
		시판/ · 현이 · 실(무신고, 과소			и
		_ , _ , ,	도선고/에 떠든 가전세 : 할 세액의 20%		
가 산 세	. –	: 과소신고는	_ , , ,		
적 용		기한 내 미납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참고 1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분

	구 분	현행세율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	0.8%~2%
부동산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и нl.	소유권	0.02%
선 박	기타	15,000원
기 ㄷ~l	저당권설정	0.2%
자동차	기타	15,000원
	소유권 등록	1%
건설기계장비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고기 키시레리	저당권취득	0.1%
공장·광업재단	기타	9,000원
	ulal del	0.4%
	법인설립	비영리 0.2%
비이드기	자산재평가	0.1%
법인등기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상호설정 등	78,700원
상호 등 등기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선임	12,000원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키.어 기	변경(감구)	15,000원
광업권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ما ما ما ما ما ما	이전(상속)	6,000원
어업권 · 양식업권	이전(상속 외)	40,200원

	구 분	현행세율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 타	9,000원
	상속	6,000원
저작권 등	상속 외	40,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20,000원
	기타	3,000원
트쉬기 드	이전(상속)	12,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외)	18,000원
	설정 및 갱신	7,600원
상표·서비스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타		12,000원

면허분

구 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3 **레저세**

-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권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세 율	○ 발매금 총액의 10%		
납 세 지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소싸움 등 과세대상 사업장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군.구			
납기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가 산 세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적 용	○ 납부지연(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까지 기간 × 0.025%		

4 담배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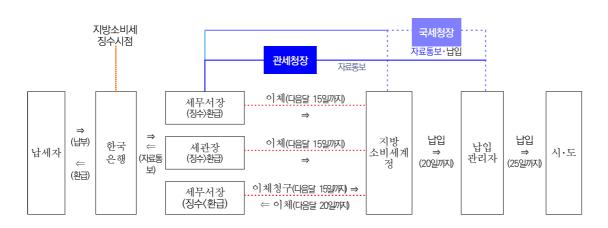
◆ 제조담배·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 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사람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등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 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ml)
세 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 련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m处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 : 궐련형 : 20개비 897원, 기타유형 : 1g 8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샙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납기	○ 매월 말일까지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가 산 세 적 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지연(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까지 기간 × 0.025%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의 면세담배를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위장한 경우

5 **지방소비세**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세목

납	세	의	무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	세		대	상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과	세		丑	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				윧	○ 과세표준액의 23.7/100
신	고		납	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가 징수하여 납입



6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개인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 급여 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1
납세의무자	 개인분 - 개인: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 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법인: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 중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0백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세 율	 개인분 - 개 인 : 10,000원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75,000원 + 330㎡초과시 1㎡당 250원 - 법인사업자 : (75,000~300,000원) + 330㎡초과시 1㎡당 250원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당 500원 ·지방교육세 :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납기	 ○ 개인분 : 매년 8. 16 ~ 8. 31 (정기분) ○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 이내 (신고납부)
사업소분·종업원분 가산세적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지연(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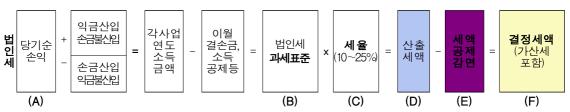
7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2013년 소득까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 되었으나, 2014년 소득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	○「소득세	법」및「법인세법」에 .	의한 과세소득	
과세표준	○「소득세〕	법」및「법인세법」에 .	의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액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종합소득 (누진세율)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012)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세 율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imes$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12\} imes$ 근속연수	
	양도소득	오두세법 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 법인지병	· 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 소득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소극문 (누진세율)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추가하여 납부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특별징수 (부가세율)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납 기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소득분): 5.1~5.31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국세(양도소득분)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산세 적용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법인지방소득세 ○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 신고간소화 대상은 제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 ○ 납부지연(미납부, 과소납부, 초과환급) 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0.025% :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0.025% □ 특별징수 ○ 특별징수납부 등 납부지연 가산세 = (②+④) (* 한도 : 미납·과소납부세액의 10%) ② 미납·과소납부세액 × 3% ④ 미납·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0.02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 2013년도 귀속분까지(국세 부가세 형식) : 국세 결정세액(F) × 10% = 지방소득세
- * 2014년도 귀속분부터(독립세 전환) : **국세 과세표준(B) × <u>독립세율</u> <u>공제 감면</u>** = 지방소득세 (1~2.5%)

재산세

◆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성격의 군.구 독립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토지, 건축물, 주택 : 물건 소재지 관할 군.구
	○ 항공기 : 등록원부 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군.구
납세지	○ 선 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군.구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토지(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수백 이외 건국물 : 시가표군액 × 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선택, 영향기 : 시가료군백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 (3단계 누진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
	※ 탄력세율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표준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
	0.05%~0.35%('21~'23 3년)
	○ 선박, 항공기 : 0.3%(고급선박 : 5%)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1.25%(5배 중과세율)
12 -1	○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기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5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3억원~6억원 이하 : 110%,
세부담 상한	6억원 초과 130% (*법인소유주택 :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
,,,,,,,,,,,,,,,,,,,,,,,,,,,,,,,,,,,,,,,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액(징수액)으로 한다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각각의 과세
재산세 도사자역분	표준에 해당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을
	교문에 해당 교문제물을 적용하여 선물한 세력에 1,000분의 1.4을 적용한 세력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1,000분의 1.4)은 조례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재산세 세율

(1)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시(읍·면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참고 2 재산세 물납 및 분납

구 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방법)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 (물납대상자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
분납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방법)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분납신청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참고 3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재산분) 세액의 20%

9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납세의	 리무자		○ 소유분 : 과세기준일(매년 6. 1,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승용자동차(연세액)										
		영 업		비 영 업 용								
		배 기 량	СС	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호		하	80원					
		1,6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1,600cc≎Ì	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	귄	200원					
		- 	2,500CC조파 24원									
		○ 승합자동차(연세액)									
세	율	구 분		영 업		ŀ	비 영 업 용					
/II	芒	고속버스		100,00	-							
		대형전세버스		70,00		-						
		소형전세버스	50,00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연세액)										
		구	분			급 액						
		영 업			6,600원 ~ 45,000원							
			업 용		28,5	00원 ~	157,500원					
		○ 교통.에너지.환경서	액의 1	.,000분의 260								
납	7]	○ 정기분(연세액의 1 ○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 승겨 영업용(비영업용)차 - 이전.말소등록 시 ○ ※ 연세액을 한꺼번○ 따른 세액공제 ○ 주행분 : 교통.에너	취득 및 량의 비 1전(말소 신고·	및 비과세(과세 영업용(영업용 s) 등록일을 기 납부하는 경)차량이 과세() 전환 시 일힐 준으로 일할계 우 : 지방세법	비과세) 1 계산 산	차량이 되는 경우,					
가 선 적	난 세 용	○ 자동차세(주행분) - - 무신고 : 납부하 - 과소신고 : 과소신 ○ 자동차세(주행분) ¹ : 미납부(과소) 세액 × 0.025%	H야 할 신고분 서 납부지역	세액의 20% 세액의 10% 연(기한 내 미	납부, 과소납 ¹	부) 가신	<u>-</u> 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령에 따라 경감률 적용 과세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0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 세 의 무 자	○ 흐르는 물을 이용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 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소방분(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과 세 대 상 및 표 준 세 율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소방분 - 소방시설에 충당: 건축물 및 선박가액의 0.04 ~ 0.12%(6단계 누진)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중과세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장례식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대형마트, 백화점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세 ※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원자력·화력발전 제외)
납 세 지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 지 하 수 : 채수공의 소재지 -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테이너 취급 부두의 소재지 -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소방분 - 건축물 : 물건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납 기	○ 특정자원·시설 : 매월 말일까지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1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등록	○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재산세,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약)में										
	○ 과세.	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취득물건의 과세표준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0/100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3배 중과										
,	2	등록면허세액	20/100										
세 율	3	레저세액	40/100										
	4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5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세액	25/100(구) 10/100(군)										
	6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20/100										
	7	자동차세액	30/100										
납부지연 가산세적용	- 납부 : 미납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 가산서 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 0.025%											

Ⅲ.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1 개요

□ 관련 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5.14.)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8.9.3.)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권한

- 1. (역할) 고충민원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2.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권,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④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2.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이미 집행이나 처분이 완료된 것에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부과취소 등 세무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민원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신청 기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처리 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필요시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 이내에 처리 가능)

2 고충민원 신청

□ 고충민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제외 대상

-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 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고충민원의 분류

- 1. 구청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

- 1.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 2. 처리기간 : 접수한 납부터 14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 산입)
 - ※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신청(접수)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납세자보호관(032-749-7133)에게 문의

□ 신청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3

권리보호요청

□ 권리보호요청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의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

□ 요청대상

-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 1. 지방세기본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지방세기본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제외)
-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 하게 요구하는 행위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 기한 및 처리기간

- 1.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 2. 처리기간 : 접수한 납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 가능

□ 신청(접수)방법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납세자보호관(032-749-7133)에게 문의

□ 신청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4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

□ 세무조사 기간 연장

①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이 신청

1.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 · 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2. 연장기간 : 20일 이내

3. 연장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 신청
 - 1.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 · 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 2. 연장기간 : 20일 이내
 - ※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 에서 제외

□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1.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접수)방법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납세자보호관(032-749-7133)에게 문의

□ 신청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5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결정

-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전까지
-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1.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4. 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 토요일을 제외)
-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 신청(접수)방법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납세자보호관(032-749-7133)에게 문의

□ 신청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업무범위

-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
-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기하 연장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

-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
-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접수)방법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 1.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2.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가산세 감면신청

○ 가산세 감면신청 및 결정

-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
-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가산세 감면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신청(접수)방법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징수유예 등의 신청

○ 징수유예 등 신청 및 결정

-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 관에게 신청
-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의 이유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접수)방법

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1

II l

개요

□ 도입 배경

-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의 불복 청구 시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대리인 선정이 가능 하나, ※ 20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O 근거: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 2020.3.2.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주요 내용

-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20.3.2.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서,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 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되며,
- O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시장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 선정을 하여 신청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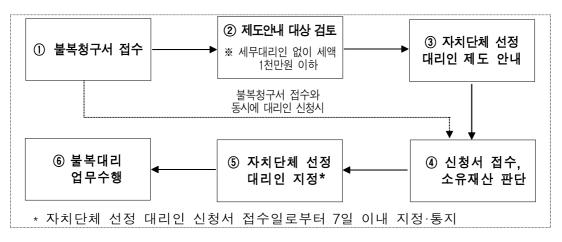
선정대리인 제도

□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신청요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시쳐미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신청 및 지정절차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위촉·관리	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8

국선 대리인과 자치단체선정 대리인 제도 비교

- <국선대리인과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주요내용 비교> —

	구분	국선대리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우	리촉대 <i>상</i>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좌 동>					
신	· 신청세액	청구세액 3천만원	청구세액 <u>1천만원</u>					
<u> Z</u>	부용 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u>개인</u>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조례에서 따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u>개인(배우자 포함)</u>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조	형용제외 세목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 지방소비세, 레저세					

IV.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해당 조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	9 ①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	9 ②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등기 병행)	취득세	9 ③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	9 ④
취득세	비과세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취득	취득세	9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취득세	9 ⑥
		상속개시이전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취득세	9 ⑦ 1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등	취득세	9 ⑦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등록면허세	26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 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등록면허세	26 ② 1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으로 서 주소, 성명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록면허세	26 ② 2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의 등록	등록면허세	26 ② 3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 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	등록면허세	26 ② 4
		수출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1
		주한외국군의 군인에 판매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2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3
		외항선 등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4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 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5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6
		북한지역 취업근로자 등 판매용	담배소비세	54 ① 7
		함상훈련 해군사관생 등	담배소비세	54 ① 8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궐련 200개비한)	담배소비세	54 ②
		수출담배가 불량 등으로 다시 수입되어 담배보관소 반입을 위한 반출	담배소비세	54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민세	77 ① 1
주민세	비과세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세	77 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인분 주민세	75 ① 1
지방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 는 소득	지방소득세	90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해당 조항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세	109 ①
재산세 자동차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유료사용은 부과)	재산세	109 ②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재산세	109 ③ 1
재산세	비과세	산림보호구역,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재산세	109 ③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 시사용 건축물	재산세	109 ③ 3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속하는 재산 재산세 109 (2)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 자산세 109 (3) 건가 유지 및 묘지 재산세 109 (3) 인상 재산세를 부과하 자산세 109 (3) 및 현재 1년 미만인 임 재산세 109 (3) 으로 사용하는 선박 재산세 109 (3) 철거명령을 받은 건 자산세 109 (3) 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 자산세 109 (3) 등 제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 126 ** 용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 126 ** 용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 126 ** 위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 126 ** 기발하여 이용하는 특정 지역자원시설세 145 (1)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45 (1) 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45 (1)	109 ③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 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한 건축물 등		109 ③ 5
		국가 등이 소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	126 • 1
자동차세	비과세	국가 등이 환자수송용 등에 제공하는 자 동차	자동차세	126 • 2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	126 • 3
		선림보호구역,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 시사용 건축물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 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한 건축물 등 국가 등이 소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등이 환자수송용 등에 제공하는 자 동차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45 ① 1
지역자원 시설세	비과세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45 ① 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 (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지역자원시설세	145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범례: (취) 취득세, (등) 등록면허세, (주개) 주민세 개인분, (주사) 주민세 사업소분, (주종) 주민세 종업원분, (지소) 지방소득세, (재) 재산세, (재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자동차세, (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세목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Пo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44	천재지변 등 감면(지방의회 의결)												18년
§ 6①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	50										23년	18년
§ 6(2)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등 감면	50										23년	18년
§ 63	자경농민 경작용 하천점용 면허 등 감면		100									21년(종료)	18년
§ 64	귀농인에 대한 감면	50										24년	18년
§ 7①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100										23년	18년
§ 7(2)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감면	100						100				23년	18년
§ 8①	개간농지 등에 대한 감면	100										22년	18년
§ 8(2)	교환·분합 농지에 대한 감면	100										22년	18년
§ 83	임업 후계자 교환·분합 임야 감면	100										22년	18년

		세목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뜽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83	임업후계자의 보전산지(99만㎡) 임야 감면	50										22년	18년
§ 84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따른 감면	0.8%										21년 (종료)	18년
§ 9①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50										23년	18년
§ 92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2년	18년
§ 93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감면	100										22년	18년
§ 93	어업권에 관한 면허에 대한 감면		100									22년	18년
§ 10①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담보물 감면		50									22년	18년
§ 10(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부동산 감면				100	100						24년	18년
\$11①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75										23년	18년
§ 11(2)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감면	50						50				23년	18년
												20년	10 [
§114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감면											(종료)	-
§ 12①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50						50				23년	18년
\$ 10/D	시아케이어 사리드리 기대											20년	
§ 1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감면											(종료)	_
§ 13(1)1	농어촌공사 농지기금 융자담보물 등기 감면											14년	_
\$ 10.01	0.1/0.1 0.1/18 8.1875 0.1.85											(종료)	
§ 13①2	농어촌공사 FTA기금 융자담보물 등기 감면											15년	_
§ 1321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 감면	50						50				(종료) 22년	18년
8 13 2/1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 시설용	50						100				22년	10건
§ 13②1의2	토지와 그 시설물 감면	50 50						50				22년	18년
	농어촌공사의 취득(환매)용 부동산 감면	50											
§ 13 ² 2	(회생농민의 농지 환매취득시 면제 연장)	(100)						50				22년	18년
§ 13@3	농어촌공사 FTA 관련 취득농지 감면	50										22년	18년
§ 13@4	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감면	25										22년	18년
§ 13@5	농어촌공사 농지기금용 취득 농지 감면	50										22년	18년
§ 13③	농어촌공사 국가 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100	100			24년	18년
§ 14①	농업협동조합 등 구판용 부동산(중앙회)	25						25				23년	18년
\$ 14/0	노천 드 원이 그이드 기어이 남드시 기대											16년	_
§ 142	농협 등 회원 교육등·사업용 부동산 감면											(종료)	_
§ 143	농협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100						100				23년	18년
§ 14 ④	농협 등 단체에 대한 감면											14년	_
9 11(1)												(종료)	
§ 14의2	농업경제지주회사, 자회사(유통자회사)의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17년 (조리)	-
§ 15(1)	성접사용 구동산 삼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50						50				(종료) 22년	18년
§ 15①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22년	10년 22년
9 IO(P)	/1001년로0/기계 세현 復년	100	100					100	100			66 Y	66.57
§ 16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100 (280만원 한도)										24년	18년
§ 17①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00								100		24년	18년
§ 17의2	한센인 지원을 위한 감면	100						100	100		100	24년	18년

						세목병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니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납부
6 10	의 그리네시크 (A 그리네 제국 기리		· ·	1 2 11	' '	1 0			11			(까지)	(부터)
§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25						25	100			22년	18년
§ 19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4년	18년
§ 19-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3년	18년
§ 20 1	노인복지시설(무료)에 대한 감면	100						50				23년	18년
§ 20 1	경로당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23년	18년
§ 20 2	노인복지시설(유료)에 대한 감면	25						25				23년	18년
§ 21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75						100				23년	20년
§ 21 ²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100						50				23년	20년
§ 22①~③,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2년	18년
§ 22 ④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 무료 제공에 대한 감면											19년 (종료)	18년
§ 226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감면	30						50				24년	18년
§ 22의2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감면	100 (140만원 한도)										24년	19년
§ 22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감면											16년 (종료)	-
§ 22°]4	사회적기업 감면	50	50					25				24년	18년
§ 23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100 50 25						100 50 25	100			20년 21년 22년	18년
§ 23 ²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100 50 25						100 50 25	100			20년 21년 22년	18년
§ 25(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16년 (종료)	-
§ 2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00						100				24년	16년
§ 27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25 25						25				20년 21~22년	18년
§ 27 ²	산재의료병원에 대한 감면	75 50 50						50 50(5년간) 50				20년 21년 24년	18년
§ 28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14년 (종료)	-
§ 28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18년
§ 28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25										22년	18년
§ 29①1	국가유공자 대부금 융자용 부동산 감면	100										23년	18년
§ 29(2)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3년	18년
§ 29③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감면	100						100	100		100	23년	18년
§ 29(4)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감면	100								100		24년	18년
§ 30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18년

						세목병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나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30 ²	보훈병원 감면	50 50						50 (5년간) 50				21년 24년	18년
§ 30③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24년	18년
§ 31①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최초 분양받는 경우	100										24년	18년
§ 31①2	건설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 60㎡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50										24년	18년
§ 31@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100										24년	18년
§ 31@2	20호 이상 자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										24년	18년
§ 31@1	임대사업자가 40㎡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100	100			24년	16년
§ 31 <u>@</u> 2	임대사업자가 60㎡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0	50			24년	16년
§ 31@3	임대사업자가 85㎡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25				24년	16년
§ 316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감면	50 25						50 50				21년 24년	16년
§ 31 º12 ①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16년 (종료)	-
§ 31 의 3①_1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전용40㎡ 이하)							100	100			24년	18년
§ 31 의 3①_2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전용60㎡ 이하)							75	75			24년	18년
§ 31의3①_3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전용85㎡ 이하)							50				24년	18년
§ 31.41), 2-1	공공임대리츠주택 감면(전용60㎡ 이하)	20 (중과제외)						40				21년 (종료)	18년
§ 31 의 4①, ②-2	공공임대리츠주택 감면(전용85㎡ 이하)	20 (중과제외)						15				21년 (종료)	18년
§ 32①	LH공사 소규모공동주택(60㎡) 감면	50 25						50 25				21년 24년	18년
§ 32 ⁽²⁾	LH공사 분양목적 공동주택용 주택 감면											16년 (종료)	-
§ 32º12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35						25				21년 (종료)	18년
§ 33①	주택건설사업자 소규모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감면											l4년 (종료)	-
§ 33②	서민주택(1억 미만, 40㎡ 이하) 감면	100										24년	18년
§ 34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보증을 위해 주거용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16년 (종료)	_
§ 34⑦	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감면											16년 (종료)	-

						세목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35①	주택담보 노후 연금주택에 대한 감면		75 (300만원 한도) 75 (225만원 한도)									21년 24년	18년
§ 35 ²	주택담보 노후 연금주택에 대한 감면		C					25				24년	18년
§ 35③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주택 감면							25				21년 (종료)	18년
§ 35º12	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에 대한 감면							100				24년	18년
§ 35의3	전세목돈 참여 집주인 감면											16년 (종료)	-
§ 36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감면	100						100	100			24년	18년
§ 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감면											20년 (종료)	18년
§ 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50 50 (미성년자 제외)										21년 23년	20년
§ 37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75 50 50						75 50(5년간) 50	75 •			20년(종료) 21년 24년	18년
§ 38①	의료법인 감면	50 30 30						50 50(5년간) 50	50			20년 21년 24년	18년
§ 38 ²	의과대학 부속병원 감면											14년 (종료)	_
§ 384	종교단체 의료병원 감면	20~40 30 30						50 50(5년간) 50	50			20년 21년 24년	18년
§ 38의2	지방의료원 감면	75 75 75						75 75(5년간) 75				20년 21년 24년	-
§ 39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면											14년 (종료)	-
§ 39 ²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면											14년 (종료)	-
§ 40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감면	75 50 50						75 50(5년간) 50	75 •			20년(종료) 21년 24년	18년
§ 40의2	주택 유상거래 감면											13년 (종료)	-
§ 40의3_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부동산 감면											20년 (종료)	18년

						세목병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ηlo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40의3 <u>_</u> 2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부동산 감면 (21.1.1~21.12.31.취득)	50						50(5년간)				21년	18년
§ 40의3_3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외 부동산 감면	25						25				22년	18년
§ 41(1)~(5)	학교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4년	18년
§ 41⑦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	50 30 30						50 50(5년간) 50	50			20년 21년 24년	18년
§ 42①	행복기숙사(민자기숙사 제외)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4년	18년
§ 42②	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기계설비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24년	19년
§ 423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75						75				23년	18년
§ 43①~③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	100 50						100 50(5년간)				19년(종료) 24년	19년
§ 44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00 50						100 50(5년간)				19년 24년	18년
§ 44 ⁽²⁾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100						100				24년	18년
§ 44③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50						50				24년	18년
§ 44의2	박물관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100						100				24년	18년
§ 45①	학술단체의 학술연구사업에 대한 감면	100						100				24년	18년
§ 45@_1	장학법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100						100				24년	18년
§ 45@_2	장학금 지급 목적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80						80				24년	18년
§ 45의2	기초과학연구기관등에 대한 감면	100						100				23년	18년
§ 46①	중견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 (과밀억제권 내 대기업 제외)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5 (45)						35 (45)				22년	18년
§ 46②	과밀억제권역 외 대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5 (45)						35 (45)				22년	18년
§ 46③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60 (70)						50 (60)				22년	18년
§ 47	한국환경공단의 직접사업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18년
§ 47의2①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3~10										23년	18년
§ 47 ⁹ 2 ²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감면	15~20										23년	18년
§ 47의2③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10										23년	18년
§ 47의2⑤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3-15 (5년)				18.12.31.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8년
§ 47의3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감면											15년 (종료)	-

						세목부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47의4①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감면	신축50 대수선100						신축50 대수선 100				21년(종료)	17년
§ 47의4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5~10						100				24년	17년
§ 48	국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18년
§ 49	해양오염방제등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18년
§ 49의2	5G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50									23년	-
§ 50①~⑥	종교단체 및 향교에 대한 면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51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						24년	18년
§ 52①	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24년	18년
§ 522	체육진흥단체 감면	100						100				24년	18년
§ 53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4년	19년
§ 54①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25										22년	18년
§ 5423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14년 (종료)	-
§ 54©1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감면											19년 (종료)	18년
§ 54\(\bar{5}\)2,3	여수세계박람회 창업기업 등 감면											19년 (종료)	18년
§ 54 ⑥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 감면	100 (17년 종료)						(중과 제외)				(취) 17년 (재) 22년	18년
§ 55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적지)							100	100				18년
§ 55 ₂ -1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							100 (50)	100 (50)				18년
§ 55(2)-2	등록문화재							50	(00)				18년
§ 56①②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14년 (종료)	-
§ 563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50						50				22년	18년
§ 57①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4년 (종료)	-
§ 57의2①	법인합병(서비스업종 제외) (중소기업 간 합병 등)	50 (60)										24년	18년
§57의2 ²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간 일반합병	100	50									24년	18년
§ 57의2③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25										24년	18년
§ 57의2③ 2	적격분할재산법인(법인세법 § 46②)	75										24년	18년

						세목병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나o 나o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57의2③ 3	현물출자 재산(법인세법 § 47-2)	75										24년	18년
§ 57의2③ 4	자산교환법인(법인세법 § 50)	75										21년(종료)	18년
§ 57의2③ 5	중소기업간의 합병	75										24년	19년
§ 57의2③ 7	특별법 개정 등 상법상 주식회사 변경	100										24년	19년
§ 57의2④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사업용고정자산)	75										24년	19년
§ 57의2⑤ 1	과점주주(부실기관 주식 등 취득)	100										24년	19년
§ 57 ₉₂ 5 2	과점주주(금융기관 대출금취득 주식 취득)	100										24년	19년
§ 57의2⑤ 3	과점주주(지주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 취득)	100										24년	19년
§ 57 ⁹ 2 ⁵ 4	과점주주(예금보험공사 등이 정리금융기관 주식 취득)	100										24년	19년
§ 57 ⁹ 2 ⁵ 5	과점주주(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추심으로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시 주식취득)	100										24년	19년
§ 57 ⁹ 2 ⁵ 6	과점주주(농협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하여 주식 취득)	100										24년	19년
§ 57의2⑤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식 취득	100										24년	19년
§ 57의2⑤ 8	과점주주(코스닥 상장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100										24년	19년
§ 57의2⑥	농협사업구조 개편 감면(현물출자 취득 포함)											17년 (종료)	-
§ 57의2⑦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간의 합병											15년 (종료)	-
§ 57의2®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합병		50									24년	18년
§ 57 ⁹ 2 ⁹ 1	수협은행 분리로 취득 부동산											16년 (종료)	
§ 57 ⁹ 2 ⁹ 2	수협은행 법인설립 등기											l6년 (종료)	-
§ 57의2 ¹ 0	금융회사 간의 합병	50 50	50 25									21년 24년	18년
§ 57 ⁹ 3① 1	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4년	18년
§ 57의3① 2,3		100										24년	18년
§ 57º43① 4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4년	18년
§ 57 ⁹ 3① 5	부실신협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4년	18년
§ 57 ₉₃ 1 6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4년	18년
§ 57의3②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	100										24년	18년

						세목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나 나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57 ⁹ 33	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 중소기업보유자산 취득	50										23년	18년
§ 57의3④	자산관리공사가 임대조건부 중소기업자산 취득							50 (5년)				23년	18년
§ 57의4	자산관리공사 주택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50						50 (5년)				23년	-
§ 58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				23년	18년
§ 582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감면	중과 제외	중과 제외					중과 제외				23년	18년
§ 58③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50						50 (3년)				23년	18년
§ 58④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37.5						37.5				22년	18년
§ 58 º 2 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감면	35						37.5				22년	18년
§ 58 ⁹ 12 ²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50						37.5				22년	18년
§ 58의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75						100 (3년) 50 (2년)				23년	18년
§ 59①	중소기업진홍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25										22년	18년
§ 59 ²	중소기업진홍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50						50				22년	18년
§ 59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동산	50						50 (3년)				22년	18년
§ 60①	중소기업(전통시장)협동조합 등 감면	50(75)										22년	18년
§ 60 ^②	중소기업중앙회 신축 건축물 세율특례	2%										22년	18년
§603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75						50				23년	18년
§ 60③1의2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대한 감면	75						100	100			23년	19년
§ 6032	창업보육센터(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 포함) 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과 제외	중과 제외					중과 제외				23년	18년
§ 60④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50						50				22년	18년
§61①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											16년 (종료)	-
§ 61 ²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l6년 (종료)	-
§ 62①	광업지원(광업권 설정) 감면		100									24년	18년
§ 62②	광업지원(광업권 출원, 지상임목) 감면	100										21년	18년

						세목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片이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62③	광업진홍공사 감면(석재기능공시설)											19년 (종료)	18년
§ 62의2	알뜰주유소에 대한 감면											14년 (종료)	-
§ 63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면	25										22년	18년
§ 63②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면 (철도차량, 국가귀속)	100						100	100			22년	18년
§ 63③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 감면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감면 (고속철도)	25 50 (25)						50	50			22년	18년
§ 634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감면	100	100										18년
§ 63⑤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100 (조례)	100 (조례)					100 (조례)	100 (조례)			22년	22년
§ 64①	국제선박 등록 지원을 위한 감면	△2% (세율)						50				24년	18년
§ 64 ²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1% (세율)						50				24년	18년
§ 643	LNG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감면	△2% (세율)										24년	18년
§ 64의2	e-Nav 단말기 무선국 개설에 대한 감면		100									23년	-
§ 65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감면	△1.2% (세율)						50 (5년)				24년	18년
§ 66(1)(2)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8년
§ 66③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100 (40만원 한도)										22년	18년
§ 66 ④	전기·수소차에 대한 세액공제	100 (140만원 한도)										24년	18년
§ 66의2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감면											17년 (종료)	
§ 67①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00 (50만원 한도) 100 (75만원 한도)										21년 24년	18년
§ 67②	10인승 이하 승합, 화물차 감면	100										24년	18년
§ 67③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감면									소형 일반 버스 세율		24년	18년
§ 68①1	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차 등 감면	100								100		24년	18년

						세목병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바이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68③	대외 무역용 중고선박 등 감면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2% (세율) 100										24년	18년
§ 69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25										22년	18년
§ 70①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저당권 종료)	50										24년	18년
§ 703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 버스 감면	75										24년	19년
§ 70 ④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 및 수소 버스 감면	100										24년	20년
§71①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35				22년	18년
§ 71 ₂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50						35 (5년간)				22년	18년
§ 713	복합물류 터미널사업 시행자 감면	25						25				22년	18년
§ 72(1)(2)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2%			100	100		100	100			 22년	20년
§ 723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감면											14년 (종료)	-
§ 73①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감면	100											18년
§ 73(3)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100											18년
§ 73의2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감면	100 50										20년 24년	19년
§ 74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00										22년	20년
§74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75										22년	18년
§ 74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용 취득 주택 및 체비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5 100										22년	18년
§ 7451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50										22년	18년
§ 74 <u>5</u>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50										22년	18년
§ 74 ⑤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주택 취득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6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	75* 50**										22년	18년
§ 75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5년 (종료)	-
§ 75의2①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종전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 1년 유예	50 (조례)						50 (조례)				22년	18년
§ 75º12112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종전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 1년 유예	50 (조례)						50 (조례)				22년	18년
§ 75º12①3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18년

						세목병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나 나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75 ⁹ 2①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18년
§ 75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50 (조례)						50 (조례)				24년	18년
§ 76①	LH공사의 제3자공급용 토지 감면											19년 (종료)	18년
§ 76 ²	LH공사의 제3자공급용 부동산중 국가, 지자체에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용지 감면							100	100			22년	18년
§ 77①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감면											19년 (종료)	18년
§ 77②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중 국가, 지자체에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용지 감면							100	100			22년	18년
§ 781\2\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35~60				22년	18년
§ 78 <u>4</u> 27}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감면(신축)	50 (+조례25)										22년	18년
§ 78④2나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감면(대수선)	25 (+조례15)										22년	18년
§ 78 ⁹ 1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35						50				22년	18년
§ 78의3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그 다음 2년 동안)	100 (50*)						100 (5년) (50**)				22년	18년
§ 78의3 ②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위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00						100 (5년) 50 (2년)				22년	18년
§ 78의3 ③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50 (3년) 30 (2년)						50 (3년) 30 (2년)				22년	18년
§ 78의3 ③2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50						50 (3년) 30 (2년)				22년	18년
§ 79①②	법인 지방이전 감면	100	100					100 (5년) 50 (3년)				24년	19년
§ 80①	공장 지방이전 감면	100						100 (5년) 50 (3년)				24년	19년
§ 81①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종전 감면율 1년 유예											17년 (종료)	-

						세목	별					일몰	최소
규 정	주 요 내 용	취	비이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기한 (까지)	납부 (부터)
§ 813	이전공공기관 직원 감면	62.5~ 100										22년	18년
§ 81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62.5~100										24년	18년-
§ 8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감면							100 (5년)				24년	18년
§ 83①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감면	100						50 (5년)				24년	18년
§ 83②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100						50 (5년)				24년	19년
§ 84①	사권제한토지 등 감면							50				24년	18년
§ 84(2)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감면							50				24년	18년
§ 843	철도안전법에 의한 사권제한 토지 감면							50				24년	18년
§ 85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감면	100 50 25						100 50 25	100 50 25			20년 21년 22년	18년
§ 85 ²	민영교도소 감면											14년 (종료)	-
§ 85 ₉₂ 1,3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제외)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20년
§ 85 ⁹ 2①4	지방공사(택지개발사업 국가 무상귀속 토지) 감면							100				22년	-
§ 85의2②	지방공단 감면	100 (조례)						100 (조례)				22년	20년
§ 85의2③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
§ 87①1,2	신용협동조합 감면	100						100				23년	18년
§ 87@1,2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00						100				23년	18년
§ 88①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	100						100				22년	20년
§ 89①~④	정당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2년	20년
§ 90(1)(2)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22년	20년
§ 91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감면	2% (세율)	100								_,*	22년	-
§ 92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감면	100	100							100			

^{*} 각 조항별 세부 감면요건 및 추징규정, 감면적용 기한(일몰기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등 반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근거 보완	▶ 다양한 방식 [*] 의 전자신고도입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전자신고 대상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 * 신고 및 인·허가 시스템 등
②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 의무 신설	▶ 경정청구의 처리가 2개월 이내에 곤란한 경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 기간이 지난 때부터 불복청구 가능함을 청구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③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납부의무 소멸 시기 등
④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	 >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가산금 기산일 조정	기산일을 현행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 등으로 환원* * (~'16년) 납부일 등 → ('16년~'21년) 경정청구일 → ('22년~) 납부일 등
⑤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 경정청구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⑥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등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선정 사유 추가	사유 신설
⑦ 압수물건 인계 주체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압수물건 인계
사법경찰관 추가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제공대상 추가	추가

2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경륜 등 온라인발매분의 레저세는 본장 소재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나누어 귀속
②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국세가 환급된 경우, 그 환급통보를 받은 날에 지방 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다시 시작하도록 개선
③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④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이용현황만을 반영하여 주택 으로 과세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저율 과세를 배제
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 재산세와 병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분할납부(250만원 초과할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②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감면 연장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서민주택(전용면적 40㎡, 취득가격 1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연장
③ 친환경 자동차 감면 연장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④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한도 상향(50만원→75만원)

4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

Ⅱ 감면 대상자

- □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 임대료 인하 참여 건물주
-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 세목

- □ 7월·9월분 재산세(군·구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세)
- * 2022년 건축물·토지분 재산세 (군·구세)외에,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시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 같이 감면

③ 감면 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200만원 한도)

< 주요 감면 적용기준 >

-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하여 감면
 - 2022.1월~12월의 월별 임대료 인하금액 중 상위 3개월 인하금액 적용
 - 월별 임대료 인하금액 산정시 기준 임대료는 인하 직전 임대료 적용
 - 과세기준일(6.1) 이전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갱신,재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도 감면
- ◆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
- ◆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합계금액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총금액 범위내에서 감면(세목별 금액 비율) 후 감면할 잔액이 있는 경우 감면할 잔액을 9월 정기분 (토지) 재산세·지방교육세 총금액 범위내에서 감면(세목별 금액 비율)
 - 일부 임대부분 세액 산출은 전체 시가표준액 중 임대부분 시가표준액 비율로 산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032-749-7470)으로 문의

4 감면 제외

-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사치성 재산 제외
- □ 현행 지방세법령 등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지특법 제180조 적용)

5 추징 대상

- □ 감면신청 내용과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 □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 료 또는 보증금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

6 감면처리(신청방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관련 증빙서류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 유용한 지방세 정보

$oxed{1}$ 지방세 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구 분	심리·의결	결정
과세 前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군・구세 : 군수・구청장 광역시세 : 광역시장
	이의신청	″	<i>'</i>
과세 後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
	심사청구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행정소송	판사	판사

^{*} 사유: ①각하결정사유 해당. ②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 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함

2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광역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군·구세의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③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 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 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4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등)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5 행정소송(지방세기본법 제98조)

-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함.
-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함.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의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수정신고(지방세기본법 제49조)

□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신고'라 함

□ 요건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효과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됨.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비고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초과~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 	•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이내에 그 결과를 통자하지 아니한 경우: 50%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2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의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 함

□ 요건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효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3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의의 및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함.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함

□ 효과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
-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실시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비교〉

구분(효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력	0	×	×
가산세의 감면	 1개월 이내: 90% 감면 2개월~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6개월: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20% 감면 1년6개월~2년 이내: 10% 감면 	_	• 2개월~3개월 이내: 30% 감면 • 4개월~6개월 이내: 20% 감면

3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 지방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Ⅱ 지방세 분납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 입법취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 신청 : 납부기한내 신청

○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분할납부 방법

구 분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후 2개월이내 분납액	250만원 초과액	50% 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 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를 준용하여 분할납부 가능

② 지방세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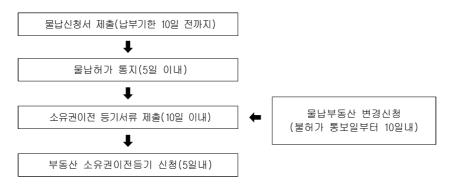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 입법취지

-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동일 구·군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물건 : 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 물납 체계도



-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주 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 시기표준액
- ·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의 기가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4 지방세 체납시 제재

○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체납 시 제재의 종류

연번	제재의 내용	법적 근거
1	납부 독촉(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3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39조
4	출국금지	지방세징수법 제8조
5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6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7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8	[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지방세법 제131조

5 납세증명서의 제출

○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 세의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념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징수유예 등)·제26조(부과철회) 및 제105조(체납처분유예)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 □ 제출사유(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일 2020.4.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임.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2022 지방세 종합안내

- o 본 종합안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안내·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o 구체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바, 과세관청 및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